

강사료지급 규정

제 정 1995. 3.
 개 정 1999. 3.
 개 정 2000. 3.
 개 정 2011. 8.
 개 정 2019. 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한다)의 교원 등의 강사료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8.22)

제2조 (삭제 2019.8.22)

제3조 (삭제 2019.8.22)

제4조 (삭제 2019.8.22)

제5조 (삭제 2019.8.22)

제6조 (삭제 2019.8.22)

제7조 (강의의 구분) 본 대학의 강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평상수업을 보통강의라 한다.
2. 책임시간 이외의 수업을 초과강의라 한다.
3. 전임교원 이외의 교원이 시간제로 담당하는 수업을 시간강의라 한다.
4. 국내외의 저명인사 등에 의한 수업을 특별강의라 한다.
5. 실험, 실습, 실기 등의 지도와 시범을 특수강의라 한다.

제8조 (책임시간 및 한정시간) ①교원의 주당 책임시간 및 한정시간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②전항의 책임시간에 미달하거나 한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강사료 지급) 전임교원의 초과강의와 강사의 시간강의 및 기타 특별강의에 대하여는 실제수업을 기준으로 각각의 강사료를 지급한다. 다만, 그 기준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19.8.22)

제9조의2(강사의 방학 중 임금)(신설 2019.8.22.) ①제1항의 강사에게는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한다.

②제2항의 방학기간 중 임금은 교육부의 ‘방학 중 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수업을 담당하는 1학기 또는 2학기를 기준으로 하여 학기 전·후 각 1주씩 총 2주(연간 총 4주 이내)로 한다.

제10조 (강사료 산출) ①강사료는 실제 수업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단위로 계산한다.(개정 2019.8.22)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담당 배정표에 의한 수업이 진행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시험시간
2. 교내 또는 국가적 행사로 인한 휴강
3.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교가 임시휴업한 경우
4.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특수강의의 시간산출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대단위 수업의 경우 강사료의 추가지급 등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9.8.22)

⑤시간강의 및 특별강의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료의 지급기준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외국인, 명예교수 및 저명인사의 시간강사료
2. 강의에 출강하기 위한 장거리 교통비 및 숙박료 등

제11조 (강사료 지급기일) 초과강사료 및 시간강사료는 실제강의가 진행된 해당학기의 소정기간 내에 지급한다. 다만, 학기말에 해당되는 달의 강사료는 이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8.22)

제12조 (타대학 출강 등에 대한 승인) 본 대학 전임교원이 타 대학 등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대학의 담당시간을 포함하여 한정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 (기타사항) 교원 등의 강사료 지급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19.8.22)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의 변경사항은 2010학년도 1학기 출강 대상자부터 별도의 지침에 의해 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